

호계동 911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) 결정(안) 열람공고

동안구 호계동 91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) 결정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·공고합니다.

2024. 8. 13.

안 양 시 장

1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) 결정(안) 조서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안) 조서

구 분	도 면 표시번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 설	①	호계동 911 지구단위계획구역	동안구 호계동 911번지 일원	-	증)12,627.3	12,627.3	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안) 사유서

구 분	도 면 표시번호	구역명	결 정 내 용	결 정 사 유
신 설	①	호계동 911 지구단위계획구역	◦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(12,627.3㎡)	◦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에 대하여 향후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

2. 열람 일시 및 장소

가.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: 2024. 8. 13. ~ 2024. 8. 27.

나.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: 안양시청 도시계획과(☎031-8045-2568)

다. 관련도서 : 계재생략(공람장소에 비치)

라. 기타사항

- ▶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입안 예정
- ▶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)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